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치법규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전통시장의 인정과 인정취소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6조～제11조)

○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범위, 지정절차, 관리 등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～제15조)

○ 시장정비사업의 대상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취소의 절차 등 시장정비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～제18조)

○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, 관리, 신고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19～제22조)

○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～제26조)

○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(안 제27조～제35조)

○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6조～제37조)

○ 시장·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(안 제38조)

○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(안 제39조)

○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40조～제41조)

○ 수탁자의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및 군수의 지도·감독 및 인·허가에 관한 사항(안 제42조～제44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9. 10. 22.～2019. 11. 11, 이상없음

○ 규제심사 : 개선사항 없음【기획감사실-10567(2019.10.21.)】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【가족지원과-42666(2019.10.17.)】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,

○ 전통시장의 인정, 상권 활성화구역의 지정, 시장 정비사업의 촉진, 임시시장 및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, 상인회의 설립, 시장관리자의 역할, 시설물의 위탁 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,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